

고자 하는 것임.

서울특별시의회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23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3년 1월 29일  
제안자 : 윤영위원장

I. 주 문

1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민의 장묘문화를 개선·정착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2.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

II. 제안이유

- 우리 사회는 매장(埋葬)중심 장묘문화의 오랜 관습으로 국토의 잠식과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, 특히 서울시는 묘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화장중심의 의식전환, 장묘제도의 개선, 장묘시설과 화장 및 납골 시설의 정비·확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새로운 장묘문화의 정착을 의회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

서울특별시의회청계천복원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25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3년 1월 29일  
제안자 : 윤영위원장

I. 주 문

1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청계천복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청계천복원사업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2.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

II. 제안이유

-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·건설·역사·문화·교통·도시정비·하천복원·환경 등 여러 분야의 사업에 대한 폭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의회 차원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청계천복원사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서울특별시의회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26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3년 1월 29일  
제안자 : 윤영위원장

I. 주 문

1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